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3
----------	--------

제출일자	2005. 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8240호 2004. 1. 20)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 「거창군 계획조례」 시행(2003. 7. 31)이후 관리지역 등의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위제한을 완화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함.(안 제20조 제2호)
-경사도 20%에서 20도로 허가기준 완화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함.(안 별표16)
-자연녹지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설치를 허용토록 함.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함.(안 별표19)
-계획관리지역 내 2002년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공장부지 내에서 증축·또는 개축행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전부허용

■ 개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20퍼센트”를 “20도”로 한다.

별표16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3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제8호 가목 내지 마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19 제11호중 “(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를 “(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로, 군수가 다음에 “1만”을 “1만5천”으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를 “것과, 2002년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참고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개발행위 허가기준)①(생략)	제20조(개발행위 허가기준)①(현행과 같음)
1.(생략)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 <u>20퍼센트</u> 미만인 토지 다만	2. ----- <u>20도</u> -----
경사도 <u>20퍼센트</u> 이상인 토지에 대하	----- <u>20도</u> -----
여는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	-----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	-----
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	-----
×100m)을 선정하여 단위 면적 내 등고	-----
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
3.~4(생략)	3.~4.(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16】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	【별표16】 -----
할 수 있는 건축물	-----
1.~10. (생략)	1.~10. (현행과 같음)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 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제 15제6호 가목내지 마목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 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제8호 가목 내지 마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군 지역으로 이전 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2.~19 (생략)	12.~19. (현행과 같음)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10.(생략)	【별표19】 ----- ----- 1.~10.(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 (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1. ----- ------(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만5천 ----- ----- -----것과,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
가.~마. (생략)	가.~마.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 임. 축. 수산업용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